

게임교육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예원예술대학교 게임교육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게임 및 애니메이션 분야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본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센터는 예원예술대학교 경기드림캠퍼스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각 지역에 본 센터의 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교육과정) ① 본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.

1. 학점은행제
2. 자격증 취득과정
3. 전문교육과정
4. 일반교양과정

② 제1항의 각 과정에 개설하고자 하는 세부과정은 본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게임교육센터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원) 본 센터의 강좌별 정원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임교육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6조(수업) 본 센터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간,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.

제7조(교육장소) 교육 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

제8조(센터장) ① 본 교육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 각계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센터의 교학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행정실) 본 센터의 행정실은 예원예술대학교 직제에 의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)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게임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게임교육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좌개설 및 예.결산에 관한 사항

2.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4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수강인원 및 학습비(수강료)에 관한 사항
6. 기타 게임교육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수강등록 및 납부금

제14조(등록 및 입학) 본 센터의 수강등록과 입학 시기는 매학기에 센터장이 정한다.

제15조(수강자격) 본 센터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학점은행 제 또는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,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16조(수강원서의 제출) 본 센터에 수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선발절차) 본 센터의 수강자 선발은 각 과정별로 전형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18조(수강등록 및 납입금 반환) ①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습자의 사정에 의해 수강료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평생교육원 규정 제4장 제18조(수강 등록 및 납입금 반환) 기준에 의거하여, 반환하도록 한다.

제5장 수업연한, 교육과정 및 수료

제19조(수업연한) 본 센터의 수업연한은 과정별로 지정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0조(교육과정) ①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육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정한다.

제21조(이수교과목) 각 과정별 이수교과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2조(수료증 및 자격인증서(자격증) 수여) ① 각 과정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수료를 인정 하고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)을 수여한다.

② 과정개설 공인기관 및 민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기관에서 발행 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.

제23조(수료증명서 발급) 각 강좌별 수료자는 수료증명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6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

제24조(수강생 지도) 본 센터의 수강생은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25조(포상) 센터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센터교육생에게 포상 할 수 있다.

제26조(징계) 센터장은 센터교육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제27조(특전) 센터교육생에게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도서관 이용 및 열람
2. 취업지원실 이용
3. 원우회, 동아리 결성 및 활동지원

- 제28조(장학금)** ① 본 센터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한 자 및 본 센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, 본교 교직원(배우자) 및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-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신청일로부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장학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이 많은 쪽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한다.

제7장 공개강좌

- 제29조(공개강좌)** ① 본 센터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센터장이 이를 정한다.

제8장 재정

- 제30조(회계)**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하며,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- 제31조(예산승인)** 센터장은 본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수입원)**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
1. 수강자의 학습료
 2. 개인이나 단체의 보조금
 3. 위탁교육 지원금(위탁교육시)
 4. 기타 수입
- 제33조(결산보고)** 센터장은 사업 수행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- 제34조(준용규정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5조(운영내규)**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 수료증]

제 호

수료증

성명 : 0 0 0

생년월일 : 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게임교육센터의 0 0 0 0 과정의 강좌를
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

20 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게임교육원센터장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

[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명서]

제 호

수료 증명서

성 명 : 0 0 0

생년월일 : 19 년 월 일생

과 정 : 0 0 0

재학기간 :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
위의 사실을 증명함

20 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게임교육센터장